

「구미시의회의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6년 4월 7일

나. 발 의 자: 김근한, 김민성 의원 (2인)

다. 찬 성 자: 김낙관, 김춘남, 소진혁, 양진오,
장미경, 정지원 의원 (6인)

라. 회부일자: 2026년 4월 8일

마. 상정일자: 2026년 4월 16일

제295회 구미시의회의 임시회
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김 근 한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의회의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활동 및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,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목적, 정의, 의장 책무(안 제1조~제3조)
- 홍보 사업 및 내용(안 제4조~제11조)
- 자료의 관리(안 제12조)
- 홍보 업무의 위탁 및 용역(안 제13조)
- 개인정보 보호(안 제14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
- 예 산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재 환

○ 본 조례안은

- 의정활동 및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발의된 안으로,
- 의정활동 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,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